

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-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선배·동료 위원님 여러분!
안녕하십니까. 국민의힘 강북구 제1선거구 이종환 의원입니다.
-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.
- 서울특별시는 「식품위생법」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를 조례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.
- 그런데 최근 개정된 「주차장법」 제6조의3(주차장에서의 금지행위)에서는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등이 설치한 주차장 내에서 야영행위, 취사행위, 불을 피우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.

- 따라서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하여, 시장이 설치한 노외 공영주차장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
- 이번 개정을 통해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을 합법적이고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, 주차장법과의 체계적 정합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

-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,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